

##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8. 4. 7. 양순경의원 외 2인  
나. 회부일자 : 2008. 4. 8.  
다. 상정일자 : 2008. 4. 14.(제1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### 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양순경 의원)

#### 1. 제안이유

「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2항 중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 위원회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」가 알맞은 문구의 표현이나 「상임위원회」가 착오로 「상임위원에」로 잘못 표기되어 합당한 문구로 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제6조제2항 중 “상임위원에”를 “상임위원회”로 개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-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2항 중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 위원회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 가 적합하고 알맞은 문구의 표현이나 「상임위원회」 현행 조례상 「상임위원에」로 잘못 표기되어 있어 합당한 문구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.

#### 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#### 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#### 6. 토론 요지

- 특별한 신조문이나 폐지 조문 없이 조문항 중 일부 문구를 합당하게 개정하여 문맥에 맞도록 수정이 필요 함.(강현삼 의원)

#### 7. 심사 내용

- 양순경위원 외 2인 수정안 발의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)
- 수정안 표결결과
  -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안 가결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)

#### 8. 심사 결과

“ 수정안 가 결 ”

#### 9. 심사보고 불임서류

1.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2. 조문대비표 1부 끝.

##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상임위원회” 를 “상임위원회 위원” 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<p><b>제6조(상임위원장)</b>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상임위원장은 당해 <u>상임위원회</u>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 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겸할 수 없다.</p> <p>③ 생략</p> <p>④ 생략</p>	<p><b>제6조(상임위원장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<u>상임위원회 위원</u>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